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해양경찰청장

1. 선발예정인원(1개분야, 6명)

가. 선발인원 : 행정분야 6명

※ 동일지역 해양경찰 하나의 관서만 지원 가능(소속기관 채용 진행 건과 중복 불가)

나.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023. 10. 20. ~ 2023. 12. 19. (2개월, 본인 희망시 기간 내 조정가능)
- (보 수) 월 2,044,900원 [월급여(1,904,900원) + 정액급식비(140,000원)]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다.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채용분야	응시관서	담당업무
행정	해양경찰청(본청)	○ 행정 업무 지원 및 담당자 보조 등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해양경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칙」 제17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양경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칙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분야	우대 요건
행 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 요건

평정요소		배점	평가기준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참조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름

《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응시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0. 11.(화) 예정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①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협력적, 적극적 자세 및 발전가능성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3. 9. 25.(월) ~ 10. 5.(목) 18:00
- 원서접수 : 2023. 9. 25.(월) ~ 10. 5.(목)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10. 11.(화) 예정
- 면접시험일 : 2023. 10. 13.(금) 또는 2023. 10. 16.(월) 예정
※ 면접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10. 18.(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청 합격자 및 근무부서 특수성에 따라 신원조사 실시 예정이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9. 25.(월) ~ 10. 5.(목)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원서접수 기관	일반전화	이메일
해양경찰청	(032) 835-2416	hulyzya@korea.kr

- e-mail : 서명하여 반드시 PDF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 ※ e-mail 제목은 반드시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지원서_성명”**으로 기재, **제출 서류는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접수한 메일로 접수확인 회신 예정으로 본인 메일로 송부 필수

6.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 주의사항 필독

- ①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1호 서식) 1부
- ② 응시원서 (별지 2호 서식) (필수제출) 1부
- ③ 자기소개서 (별지 3호 서식) (필수제출) 1부
- ④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필수제출) 1부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5호 서식) (필수제출) 1부
- 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제출) 1부
- ⑦ 우대 및 가점요건 관련 각종 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자격증) 관련 자격증 사본
 -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장애인증명서

※ 서류제출 주의사항

-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파일명** 및 **e-mail(서류전형 합격후)** 제목은
 - 1)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지원서_성명]으로 기재
 - 2) 모든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 후 PDF로 제출, 서명이 없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우대요건 및 가점요건 관련 각종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부분 불인정 처리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별지 6호 서식) (필수제출) 1부
-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7호 서식) (필수제출) 1부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나'항목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다. 응시관련 기관 연락처 (문의 및 응시서류 제출 등 주소)

채용분야	담당기관	일반전화	이메일 (응시서류 제출 시 활용)
행정	해양경찰청	(032) 835-2416	hulyzya@korea.kr

- ※ e-mail 제목 및 제출서류 파일명은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지원서_성명(응시분야)"로 기재
- [예 :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지원서_홍길동(행정1)]
- ※ 제출서류는 파일명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지원서 성명(응시분야)"로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6. 유의 사항

-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 동일지역 해양경찰 하나의 관서만 지원 가능, 소속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과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32-835-2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응시관서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 파일명 예시: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지원서_홍길동(홍보1).pdf

목 록	제출	미제출
<필수사항>		
1.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남성)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5.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6.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함		
1. (자격증) 자격증 사본 (부)		
2.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1부		
3. (취업지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 응시하고자하는 채용분야 기재
(예) 채용분야 : 행정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우대요건 : 표에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미기재	응시분야		응시관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지원동기, 성장과정, 경력 등 자유롭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2023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외국어성적·상훈·장애인여부)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관서	생년월일	성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3. . . .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8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출서류가 원본일 경우 신청가능>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